

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

의안 번호	250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25. 11. 11.
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사유

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에 대한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,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조성액(A)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말 조성액 (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 (D=B-C)	
3,383,127	73,990	3,064,500	△2,990,510	392,617

나.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금 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3,457,117	8,175,514	△4,718,397
216-01 공공예금 이자수입	73,990	125,752	△51,762
714-01 예치금회수	3,383,127	8,049,762	△4,666,635

다.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금 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3,457,117	8,175,514	△4,718,397
602-01 일반예치금 (재정안정화계정)	392,617	1,082,514	△689,897
705-01 예수금원금상환	3,000,000	7,000,000	△4,000,000
705-02 예수금이자상환	64,500	93,000	△28,500

3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4. 붙임 :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

참고자료 **근거법규**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